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 등〉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98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민간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적 혁신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 등 (안 제 3조 제4항 신설 등)	4
2. 인공지능 기본계획 추진 실적 점검 등(안 제6조 제7항 신설 등)	8
3. 인공지능 관련 지원 확대(안 제15조의2 신설 등)	13
4. 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안 제26조의3 신설)	20
5.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안 제37조의2 신설)	2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나경원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5.

다. 회 부 일 : 2025. 10.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산업은 국가 안보 및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각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서비스 대부분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정보기기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기회가 더욱 제한적인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개발이 시급함.

한편, 민간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연구개발 자금 부족, 인프라 접근의 어

려움, 양질의 데이터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주도의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결과 및 개선방안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세부계획 수립 시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

설).

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초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마. 인공지능활용교육이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및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바.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민간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적 혁신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 등(안 제 3조 제4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민간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적 혁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 제4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6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민간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적 혁신을</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신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 안 제3조 제4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민간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적 혁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규정함.
- 또한, 제6항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제3조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존중, 인공지능서비스 접근권 보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변화가 빠르고 시장의 수요에 대한 반응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주도하기 보다 민간의 창의적 실험을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만큼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일종의 기본적 권리로 보고 추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민간 주도의 혁신과 공정경쟁 기반 확립을 우선시하면서도,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임.
- 다만, 국민의 인공지능 접근권 보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민간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에서 두 정책적 목표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지자체가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시행 시 민간사업자의 창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하고 자유로

운 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인공지능 기본계획 추진 실적 점검 등(안 제6조 제7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제7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략) <u><신설></u>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⑦</u> (생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의2(세부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창업기업의 인공지능산업 분야 진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민간 주도의 서

현행	개정안
	<u>비스 공급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다. 검토사항

- 안 제6조 제7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그리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계획은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 제공이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정책환경이 급변하므로 일정 주기별로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방향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데이터 활용 및 재원 조달 등을 포괄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다소 추상적인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부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할지 기본계획과 동일한 주기로 수립할지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6조 제7항과 관련하여서는 3년마다 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의 실적 점검·보고 주기도 3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기본계획의 성과 점검과 개선 필요 사항을 수립예정인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임
- 한편, 안 제6조의2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과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AI 정책의 일관성·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개정안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6조 제2항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보다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인공지능 관련 지원 확대(안 제15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연산·처리에 필요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정책 개발, 인공지능 국제규범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2조 제1항 각호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모델 등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인 인공지능모델(이하 “한국형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연산·처리에

현행	개정안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u>국제협력을</u>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신 설>	<u>필요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 -----<u>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u>-----. 1. <u>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정책 개발</u> 2. <u>인공지능 국제규범 수립 및 변경</u> 3. <u>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한국형인공지능모델

현행	개정안
	개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 등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인 인공지능모델(이하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이라 한다)의 개발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2.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및 제공 3. 민간 기업 간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4.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공공 부문 우선 도입 및 활용 5.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해외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6. 그 밖에 한국형인공지능모델

현행	개정안
	<u>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u> ②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등에 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른 개발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 검토사항

☐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안 제15조의2 신설)

- 안 제15조의2는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초고성능컴퓨팅(HPC),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공지능 연산·처리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빠른 발전과 시장의 확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공지능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도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GPU서버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였고 2026년도 예산에도 2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 또한, 이렇게 확보한 GPU를 바탕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출자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번 10월에 전라남도 해남 솔라시도에서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음.
-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있고 인공지능 핵심 연산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은 부재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별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추진(안 제22조 제1항)

- 안 제22조는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정책 개발, 인공지능 국제규범 수립 및 변경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의 구

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제협력 분야를 법률에 각호로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면 국제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하여 정부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지원(안 제25조의2 신설)

- 안 제25조의2는 정부가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과 필요한 데이터 구축 등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챗-GPT, Gemini, Perplexity 등 해외 주요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국내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모델 학습 시 주로 영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한국어를 통해 해당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은 성능에 일부 제한이 있고 한국어를 중심으로 학습한 LLM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미 정부는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국형 LLM의 개발 및 상

용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을 위한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동의하는 입장임.

4. 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안 제26조의3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교육(이하 “인공지능활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안 제26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에게 인공지능활용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2항)
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인공지능활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디지털취약계층이 인공지능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활용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제5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의3(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교육(이하 “인공지능활용교육”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인공지능활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활용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에게 인공지능활용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

현행	개정안
	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디지털취약계층이 인공지능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활용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안 제25조의2는 국가가 지자체가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및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의 과정에 인공지능활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이 점차 보편화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 과정부터 인공지능 활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노동환경이나 작업구조도 변하고 있는 만큼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교육·전환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더욱이, 이미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디지털 격차가 인공지능 분야의 발달로 인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디지털취약계층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해야 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및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면 국민 전체의 인공지능 역량을 빈틈없이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안 제37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함(안 제37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7조의2(기금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현행	개정안
	<u>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u> 1. <u>기본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세부계획의 시행</u> 2. <u>제15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u> 3. <u>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중소기업등 특별지원 및 창업의 활성화</u> 4. <u>제2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u> 5. <u>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및 생태계 조성 지원</u> 6. <u>인공지능활용교육 강화</u> 7. <u>그 밖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④ <u>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 검토사항

- 안 제37조의2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 지원, 인공지능활용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¹⁾에 따라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출연금·융자금, 개인·단체의 임의·강제 출연금, 부담금, 기금의 차입금, 각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출연금·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함.
- 「국가재정법」 제14조²⁾에 따라 기금의 재원은 목적사업과 연계성이 있고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을 신설할 때 정부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의 출연금 외에도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제정안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은 ① 정부의 출연금, ②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④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만으로 재원이 구성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³⁾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 의 처
02)6788-5230

3)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주된 수입원인 정부출연금과 기금 목적사업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자체수입 없이 재원 대부분을 정부 등의 출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곤란한 등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신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